

환경영향평가개론

03. 전략환경영향평가



I 전략환경영향평가란?

전략환경영향평가(SEA :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2003년에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실시함으로 인해 나타난 환경영향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단계 이전에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 사전환경성검토(PERS :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이후에 2012년 7월, 「환경영향평가법」이 전면개정되면서 「환경정책기본법」의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가 통합되면서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는 전략환경영향평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II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왜 도입되었을까?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시초는 1993년의 국무총리훈령에 의한 사전협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협의제도가 도입된 계기가 된 사건은 1990년의 팔당골재채취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정부는 주택 200만호를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골재를 팔당에서 채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업 시행자였던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당시 환경처(현재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환경청은 골재를 펌프식으로 흡입하는 시설 설치, 채취선 지역의 2중 오타방지막 및 오일펜스 설치, 준설된 골재 전이층을 분류·침점시키는 작업이 가능한 야적장 및 침전지의 건립이 선행되어야 시험준설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골재채취 보류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은 수급을 맞추기 위해 준설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면서 환경적 문제가 생기면 보완한다는 주먹구구식 처방으로 준설을 시행하였습니다. 협의 이전의 준설시행이 밝혀졌으나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은 시험 준설 결과와 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질오염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준설을 강행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골재채취 반대운동을 하는 등 그 당시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국무총리훈령으로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환경분야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는 사전협의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아닌 국무총리 훈령에 의한 규정이었기 때문에 실효성 측면에서 미흡하였습니다.

이후에 용인시의 난개발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국무총리훈령에 의한 환경성검토 시행이 법적 배경이 약하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더라도 제재가 어렵고 구체적인 규정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용인시 난개발은 그 주체에 따라 민간 주택 개발 사업과 공영 개발의 형식을 띤 택지 지구 개발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999년 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개발했거나 추진 중인 18개의 택지 개발 지구와 민간 건설업자들이 건설했거나 추진 중인 89개소의 아파트 단지로 인구 40만 명 규모의 주택이 개발되었는데, 이는 신도시인 분당에 비해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두 배나 큰 규모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 주택 개발 사업에 의한 난개발은 기존 택지 지구의 기반 시설에 무임승차 하거나, 아예 기반 시설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이 자연 환경 및 교통 접근성을 활용하여 농지 및 산지에 주택을 건설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토지공사, 주택공사 및 지자체 등 정부 기관에서 진행하는 택지 지구 지정을 통한 개발도 공영개발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택지 지구



개발 방식이 민간의 소규모 개발에 비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라는 명분을 들어 택지 개발 지구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훈령의 근거 법령이었던 「환경정책기본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환경성검토를 1999년 12월에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전환경성검토의 실질적인 틀이 형성된 것은 2006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이나 토지이용현황 등 관련 구비서류를 협의기관에 제출하고, 관계 행정기관장이 이에 대한 협의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있었는데, 환경적인 영향을 계획단계에서 검토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단지 당해 계획수립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하나의 행정절차 정도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결국은 천성산 문제 등 사회적인 갈등이 심화되었고, 2006년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사전환경성검토의 절차와 방법 등이 좀 더 구체화되고, 명확해졌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협의회,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을 작성하고, 미비할 경우 본안을 작성하여 재협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출된 검토서에 대해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 검토해야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발전되어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III 전략환경영향평가

1. 법령

사전환경성검토는 1993년 1월 7일 당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토에 관한 규정」이 국무총리훈령으로 제정되면서 최초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국무총리훈령으로 시행하던 환경성 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1999년 12월 법제화됨에 따라 향후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 시 보다 면밀하게 환경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 외국의 전략환경평가개념을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행정계획의 대상 확대, 주민의견 수립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운영되던 사전환경성검토는 2012년 7월22일부터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와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통합된 소위 ‘통합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이름으로 행정계획에 대한 환경평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993. 1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검토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제270호)”에 의거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사전협의제도 시행
2000. 8	환경정책기본법에 “사전협의”의 근거를 마련하여 법제화
2003. 7	환경정책기본법에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관한 3개 조항 신설 * 협의대상 및 절차, 협의이행의 관리·감독, 개발사업의 사전허가 금지등 행정계획 수립시 대안설정·분석을 통하여 환경측면의 계획적정성·입지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전략환경평가 체계로 개선
2006. 5	* 협의대상 확대, 대안설정, 환경성검토협의회 운영, 스코핑(scoping) 도입,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재(변경)협의 규정 신설 등
2012. 7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와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통합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이름으로 행정계획에 대한 환경평가가 시행



2. 대상사업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구체적인 개발입지가 없는 정책계획(8분야 15개)과 개발입지가 있는 개발기본계획(17분야 86개)에 대해 시행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별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행정계획의 종류
정책 계획 (8분야 15개)	도시 개발(2개)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도로 건설(1개)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자원 개발(1개)	댐건설장기계획
	철도 건설(1개)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관광단지 개발(3개)	관광개발기본계획, 권역별관광개발계획, 온천발전종합계획
	산지 개발(4개)	사방사업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산촌진흥기본계획
	특정지역 개발(2개)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폐기물·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1개)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개발 기본 계획 (17 분야 86개)	도시 개발(15개)	건설공사계획,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지정, 도시·군관리계획, 기업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기업도시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물류단지지정, 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역세권개발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지정, 택지개발지구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10개)	공장건축지역지정, 문화산업진흥지구지정, 국가산업단지지정, 일반산업단지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 농공단지지정, 재생사업지구지정을 위한 재생계획, 산업유치지역지정, 외국인투자지역지정, 중소기업단지조성사업 포함 협동화실천계획
	에너지 개발(1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항만 건설(7개)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신항만건설예정지역지정, 어항지정, 어항시설기본계획, 항만기본계획, 항만재개발기본계획,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도로 건설(2개)	농어촌도로기본계획, 도로건설공사계획
	수자원 개발(1개)	댐건설기본계획
	철도 건설(2개)	도시철도기본계획, 철도건설기본계획
	공항 건설(2개)	신공항건설기본계획, 공항개발기본계획
	하천 이용 및 개발(3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시행계획, 하천기본계획
	개간·공유수면매립(1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관광단지 개발(5개)	관광지등지정, 온천공보호구역지정, 온천개발계획, 도립공원계획결정, 군립공원계획결정
	산지 개발(3개)	임업진흥계획, 산촌개발사업계획, 묘지등의 수급 중·장기 계획

특정지역 개발(27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지정,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생활환경정비계획,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지정, 마을정비구역지정, 연구개발특구지정,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 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 개발대상도서 지정 및 사업계획,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지정 또는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지정,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지정, 신행정수도 개발계획, 국제화계획지구지정, 광역개발권역지정, 광역개발사업계획, 개발촉진지구지정,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특정지역지정, 특정지역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지정, 지역종합개발지구개발계획,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및 특구계획,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설계획, 친수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폐광지역진흥지구지정,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체육시설 설치(2개)	청소년수련지구 지정, 체육시설 사업계획
폐기물·분뇨·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2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국방·군사시설 설치(2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등 지정
토석·모래·자갈·광물 등 채취(1개)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개발기본계획의 도시개발부문에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기초조사 등을 통해 사업자가 구역을 지정하여 제안하면 그에 대해 주민의견수렴을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이를 통해 당해 계획의 승인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개발구역지정을 요청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통해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타당성 등을 검토합니다. 구역이 지정 및 고시되면, 이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동일한 절차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개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실시계획을 작성할 경우, 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림 1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절차

3. 절차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사업자)은 해당 행정계획 수립시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에 제출합니다. 승인기관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해당 계획에 대해 대안의 종류, 검토항목의 세부내용 및 세부검토방법,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스코핑 결과를 공개하여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계획수립기관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사업대상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장과 승인기관에 제출하여 의견을 받도록 합니다. 관할 행정기관장은 초안, 주민공람의 장소·기간, 설명회의 장소·일시 및 의견의 제출기간·방법 등을 중앙일간신문 및 대상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합니다.

주민의견 수렴이 완료되면, 계획수립기관은 이를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하고 환경부의 협의를 받도록 합니다.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장은 환경부장관에게 직접 협의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장은 승인기관장에게 제출하여 환경부의 협의를 요청하도록 합니다.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은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검토하고 협의내용을 통보하도록 합니다. 이 때, 계획의 보완 및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보완 및 요청을 받을 경우, 계획수립자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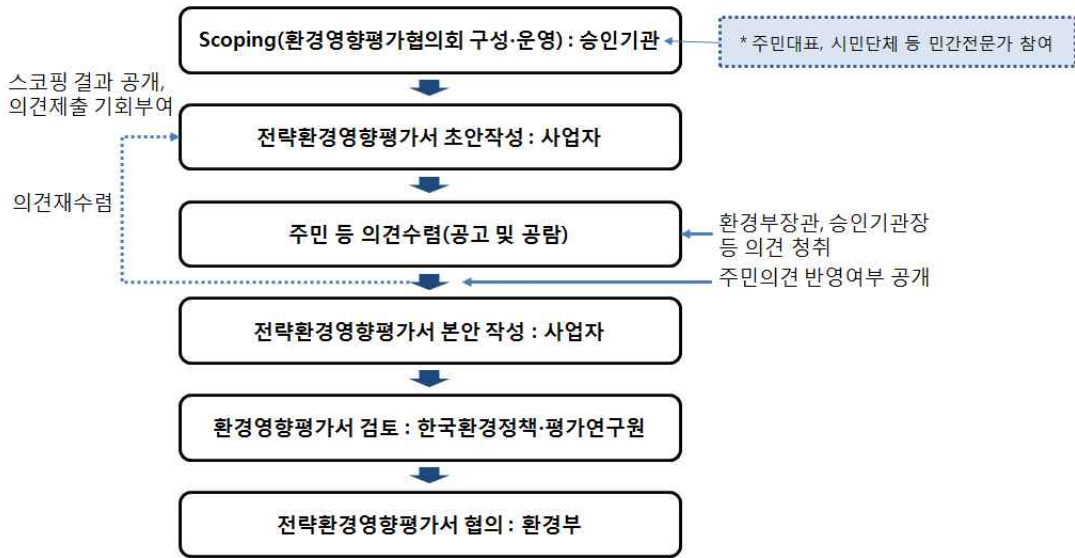


그림 2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4. 주요 내용 및 작성시 주요 검토사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환경오염현황, 대안 및 환경영향검토 결과와 저감방향,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그 외에 지역의 특성 등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본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안에는 계획의 개요, 입지에 대한 대안, 대상지역, 계획의 적정성, 입지타당성,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어야 하며, 본안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토대로 하여 평가항목 및 범위에 대한 결정 및 조치내용, 이에 대한 주민의견수렴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 참고자료,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의 부록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요약문 2.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3.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 대안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5.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6. 입지의 타당성 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8. 주민등의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내용	평가항목 및 범위에 대한 결정 및 조치 평가항목 및 범위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부록
초안	본안

표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요 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 주요 검토사항은 크게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타당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획의 적정성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이나 부합성, 대안설정 및 분석이 적절히 되었는가를 검토합니다.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종 류	선정 방법
계획 비교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수단·방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수요·공급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입지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시기·순서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기타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표 4 대안의 종류 및 선정 방법

계획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
대안설정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안 설정과 그에 대해 각 항목별로 분석이 적절히 되었는가 검토
입지타당성		
자연환경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거나 훼손의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 각종 보호 야생동·식물의 서식 공간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조간대, 사구, 하구연, 갯벌 및 습지 등에 대한 영향 검토
	지형 및 생태축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술적, 문화적,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 주요 산림축을 훼손하는지 검토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 검토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 초래 여부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도한 지형 훼손 여부 검토 주변 지역과의 조화 여부 검토 경관 관련 보전 용도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검토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심각한 경관 훼손이 있는지 검토
	수자원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 하천 및 농업용 저수지 수질보호 등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검토
생활환경	환경기준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목표 설정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검토 환경오염이 심화 또는 예상되는 지역으로 추가 개발 시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이 가능한지 검토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기초시설의 공급 가능성, 시기, 규모, 연계 처리 등이 적절한지 검토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계획에서 자원,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순환되고 있는지 검토
사회경제적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계획이 인구·주거·산업·지역 공동체 등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검토

표 5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요 검토사항 검토사항

5. 참여주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주요 참여주체는 관계행정기관장, 개발사업 시행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 대행자 등이 있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시 계획 수립의 전문가·관계기관 자문을 통하여 주요 환경정보를 파악하고 계획에 반영하기위해서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는 행정계획의 입안·수립, 허가 등의 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시작하는 때에 구성하며, 협의대상 행정계획을 입안 또는 수립하는 관계행정기관, 입안·수립권자가 행정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승인 등을 하는 행정기관, 구성주체가 종합행정기관(지자체 등)인 경우, 당해 행정계획의 입안·수립 또는 허가 등의 담당부서(도시계획과 등)가 주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해당 행정계획의 검토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전환경성검토 시마다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행정적인 부담이 되는 경우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후 2012년 전략환경영향평가로 바뀌면서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변경되었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기존의 협의기관, 관계행정기관, 전문가 외에 주민대표나 시민단체가 그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표 6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주요 참여주체

참여주체	주요역할
관계행정기관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수립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주체가 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행정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함
개발사업의 시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 요청을 하고자 하는 때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검토서를 제출할 수 있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을 작성 - 대안의 종류, 검토항목의 세부내용 및 세부 검토방법 등을 심의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관계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 행정계획의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 대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서 작성 대행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하도록 등록한 자

표 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구분	내용
인원	10인 이내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1인 : 협의기관, 계획 수립기관 또는 승인기관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 - 위 원 10인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 계획 수립기관의 장, 승인기관장등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 해당 계획 또는 사업,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나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의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서면심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계획 또는 사업과 유사한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이 여러 번 제출되어 이미 심의된 경우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특정 분야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환경영향평가법법 시행령

IV 사전환경성검토제도로 인한 효과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도입의 효과는 사업이 확정되기 이전에 주민의견수렴을 포함하여 환경적인 고려를 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이 확정된 뒤에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 계획이 변경되거나 수정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도로사업의 경우, 사전협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노선 변경에 대한 요구가 빈번함에 따라 평가 이전에 계획된 노선으로 추진된 설계와 관련기관의 협의 등이 다시 진행되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자주 나타났었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사업과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만 실시한 사업의 보완횟수 및 소요일수를 살펴보면,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도로사업의 경우, 보완없이 40일만에 환경영향평가가 협의된 반면,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보완횟수가 3회, 검토소요일도 100일이 넘어가는 등 계획의 설계 검토기간이 매우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택지개발사업에서도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은 사업을 진행하기로 확정된 상태에서 임상양호지역의 원형보전, 공원녹지를 상향, 완충녹지 추가확보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사업자가 사업성을 이유로 미반영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의견이 제시되었고, 도로사업과 마찬가지로 협의기간이 매우 장기화되었습니다. 그에 반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친 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지 보완 내용이 많지 않고, 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입지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 없어 평가서 작성 및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이 매우 짧았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사업이 확정되기 이전에 사업의 입지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해보는 단계로써 이후 사업 진행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협의기간 및 설계변경이 줄어들어 따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 8 사전환경성검토 도입 전후 비교

사업유형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보완 횟수	보완 일수	검토 일수	협의 일수	보완 횟수	보완 일수	검토 일수	협의 일수
도로	행정도시~정안IC도로	-	-	25	49	-	-	40	40
	4차순환도로(성서공단~지천~읍내동)	-	-	-	-	3	457	119	575
택지 (도시)	광양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	-	22	22	1	45	45	45
	광주제12지구(양산) 토지구획정리사업	-	-	-	-	2	96	103	199

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